경기도 공고 제2026 - 566호

2026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공고

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3. 6.

경 기 도 지 사

☐ **사업내용** : 2026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

☐ **지원대상**

-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·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('08 ~ '13년생)

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(조손)가족 지원대상자

② 노동청소년 :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(도내 5개교 : 고양 송암고, 부천실업고, 진영고, 계명고, 안양상업고)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

☐ **신청자격 :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('08~'13년생) 또는 법정대리인**

※ 단, 복지시설 생활청소년·보호대상아동의 경우, **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부모 신청 가능**

☐ **신청기간 : '26. 3. 16. (월) 9:00 ~ 3. 27.(금) 18:00 까지**

☐ **신청방법 : (온라인)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 신청,**
(오프라인) 대상자(지원 청소년)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☐ **지원금액 : 중 학 생 (학교밖청소년 '11 ~ '13년 출생자) 1,000,000원**
고등학생 (학교밖청소년 '08 ~ '10년 출생자) 1,500,000원

☐ **지원방식 : 상·하반기(4월, 9월) 각 50% 지급**(시·군별 지급일 상이)

- 상반기 지급기준 :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('08~'13년생)
- 하반기 지급기준 : '26. 9. 4.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('08~'13년생)

☐ 제출서류

-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 온라인 신청 시

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: 대상자(지원 청소년) 주민등록등·초본, 기초생활보장수급자·법정 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(조손)가정 자격정보

② 신청자 직접 첨부

· 필수 :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,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*,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

***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를 허용**

· 선택(우대조건 해당 시)

- (복지시설 입소자) 복지시설 입소확인서(신청일 현재)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구 분	법적 근거	시설·보호 유형 예시
청소년복지시설 생활 청소년	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	**청소년쉼터**
		청소년자립지원관
		청소년회복지원시설
장애인복지시설 생활 청소년	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	**장애유형별 거주시설**
		중증장애인 거주시설
		장애인 단기거주시설
		장애인 공동생활가정
보호대상아동	「아동복지법」 제3조, 제15조, 제52조	**가정위탁, 친·인척 위탁**
		아동양육시설
		아동 일시보호시설
		아동보호치료시설
		공동생활가정(그룹홈)
		자립지원시설

※ 청소년자립지원관·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또는 사후관리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말함

- (3인 이상 다자녀가정) 가족관계증명서
- (다문화가정)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- (북한이탈가정)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-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

① 담당공무원 확인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·법정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(조손)가정 자격정보, 신청인의 신분증명서,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**(민원인 지참)**

② 신청자 직접 첨부

· 필수 :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서,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*, **대상자 주민등록등·초본**

***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를 허용**

· 선택(우대조건 해당 시) :

- (복지시설 입소자) 복지시설 입소확인서(신청일 현재)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구 분	법적 근거	시설·보호 유형 예시
청소년복지시설 생활 청소년	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	**청소년쉼터**
		청소년자립지원관
		청소년회복지원시설
장애인복지시설 생활 청소년	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	**장애유형별 거주시설**
		중증장애인 거주시설
		장애인 단기거주시설
		장애인 공동생활가정
보호대상아동	「아동복지법」 제3조, 제15조, 제52조	**가정위탁, 친·인척 위탁**
		아동양육시설
		아동 일시보호시설
		아동보호치료시설
		공동생활가정(그룹홈)
		자립지원시설

※ 청소년자립지원관·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또는 사후관리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말함

- (3인 이상 다자녀가정)* 가족관계증명서
- (다문화가정)*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- (북한이탈가정)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*** (다자녀·다문화가정) 등본상 다자녀 유무 및 결혼이민자·귀화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, 위 서류 제출 불요**

□ 신청문의

-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·군 청소년 업무부서
-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*에 문의

*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: 고양송암고, 부천실업고, 진영고, 계명고, 안양상업고

□ 유의사항

- **가구당 1인까지만 선정** 가능합니다.
- **한국장학재단 꿈사다리 장학금**과 **중복 수혜할 수 없습니다.(계속장학생 신청 불가)**
-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**주소 이동, 자격요건 상실** 또는 **부정한 방법**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.

[붙임 1]

생활장학금 신청시 구비서류

신청방법	구분	구 비 서 류 명	비 고
경기민원24 온라인신청	행정정보 공동이용 자동 연계	-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 등·초본 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정보 -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정보 - 한부모가정 자격정보	거주지·지원자격 확인용
	신청인 제출	-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(시스템 입력으로 갈음) - **지원 청소년 명의 통장사본** - **(재학생)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**	**필수**
		- (복지시설) 복지시설 입소확인서(신청일 현재),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- (다자녀)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(다문화)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- (북한이탈)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	선택 (우대 조건 해당 시)
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	담당 공무원 확인	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정보 -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정보 - 한부모 가정 자격정보	소득기준 확인용
		- **신청인의 신분증명서** - **(재학생) 대상자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**	**민원인 지참**
	신청인 제출	- **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** - **지원 청소년 명의 통장사본** - **지원 청소년 주민등록 등·초본**	**필수**
		- (복지시설) 복지시설 입소확인서(신청일 현재),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- **(다자녀)***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**(다문화)***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- (북한이탈)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	선택 (우대 조건 해당 시) * 다자녀·다문화가정의 경우, **등본상** 다자녀유무 및 결혼이민자·귀화자가 **기재**되어 있는 경우 **서류 별도 제출 불요**

[붙임 2]

2026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서

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(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)

신청인 (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)	**성 명**		**생년월일**		**휴대전화**	
	주 소					
	대상자와의 관계	☐ 본인 ☐ 부·모 ☐ 기타 ( )				

대상자 (대상 청소년)	**성 명**		**생년월일**		**휴대전화**	
	주 소					
	구 분	☐ 중학생 ☐ 학교밖청소년(2011~2013년생) ☐ 노동청소년 ☐ 고등학생 ☐ 학교밖청소년(2008~2010년생)				
	우대자격	☐ 전년도 100% 청소년 생활장학금 미수혜자 ☐ 전년도 50% 청소년 생활장학금 수혜자 ☐ 3인 이상 다자녀가정 ☐ 다문화가정 ☐ 북한이탈주민가족 ☐ 청소년·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, 보호대상아동* * 보호대상아동 : 가정위탁, 친·인척 위탁아동, 아동양육시설·아동일시보호시설·아동보호치료시설·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생활아동, 자립지원시설 이용 자립준비청년				

계좌 정보	**은 행 명**		**예 금 주**	
	계좌번호			

상기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, 경기도의 선정지침을 준수하여 2026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신청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신청인(또는 대리인)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경기도지사 / OO시장·군수 귀하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■ **개인정보 수집 항목 :** 대상자 및 신청인의 성명·주소·연락처, 대상자의 계좌정보, 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(수급자 여부 등)

■ **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**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등

■ **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** 지급년도의 다음 해 12. 31.까지

■ **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**

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경기도 생활장학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.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[ ] 동의함 **[ ] 동의하지 않음**

유 의 사 항 / 제 출 서 류

유의사항	○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중·고등학령('08~'13년생) 청소년입니다. ※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○ **대상자는 생활장학금 신청기간(2026. 3. 16 ~ 3. 27.) 중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** ○ **가구당 1인까지만 선정 가능합니다.** ○ **한국장학재단 꿈사다리 장학금과 중복 수혜할 수 없습니다.(계속장학생 신청 불가)** ○ 지급계좌는 **대상자(지원 청소년) 본인 명의 계좌**가 원칙입니다. -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를 허용합니다. - 압류방지 전용계좌, 휴면계좌, 적금 및 청약계좌 등으로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부정확한 계좌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 ○ 생활장학금 지급 도중 아래 사유 발생 시, **지급을 정지합니다.** - 경기도 외 다른 시.도로 전출할 경우 - 대상자가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- 한국장학재단 '꿈사다리 장학금' 신규장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- 노동청소년(평생교육시설 재학생)이 휴학, 퇴학 등 학업을 중단한 경우, 또는 도박중독 등 품행 불량으로 장학금 오용 우려가 현저한 경우 -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○ 한국장학재단 '꿈사다리 장학금' **계속장학생임에도 불구하고** 생활장학금을 수령한 경우, **그 밖에 부정한 방법**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, 지급분에 대하여 **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**
신청인의 범위	○ 대상자 본인(2008~2013년생 경기도 청소년) ○ 부모 등 법정대리인 ○ **복지시설 생활청소년·보호대상아동**의 경우, **해당 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부모**

신청인 제출서류

○ **신청서**

○ **대상자 명의** 통장사본

※ 예외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**법정대리인 명의** 계좌를 허용

○ 대상자 주민등록등·초본

○ **(복지시설 입소자)** 복지시설 입소 확인서(신청일 현재),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

구 분	법적 근거	시설·보호 유형 예시
청소년복지시설 생활 청소년	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	**청소년쉼터**
		청소년자립지원관
		청소년회복지원시설
장애인복지시설 생활 청소년	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	**장애유형별 거주시설**
		중증장애인 거주시설
		장애인 단기거주시설
		장애인 공동생활가정
보호대상아동	「아동복지법」 제3조, 제15조, 제52조	**가정위탁, 친·인척 위탁**
		아동양육시설
		아동 일시보호시설
		아동보호치료시설
		공동생활가정(그룹홈)
		자립지원시설

※ 청소년자립지원관·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사례관리 중인 청소년 또는 사후관리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말함

○ **(3인 이상 다자녀가정)***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* 등본상 다자녀 유무가 확인 가능한 경우 위 서류 제출 불요

○ **(다문화가정)***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

* 등본상 결혼이민자/귀화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서류 제출 불요

○ **(북한이탈주민 가정)**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

○ 신청인의 신분증명서

○ 대상자가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, 대상자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